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 소 기 업 계 입 장

2016. 6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 오 소 문	1
◆ 세부 연안별 중소기업계 입장	
I.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10
II.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위 위상·권한 강화	13
III.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15
IV. 산업 구조조정 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20
V. 시장친화적 최저임금 개편 및 大·中企 임금격차 완화	22
VI.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27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 소 기 업 계 입 장
[호 소 문]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상향(이하 '대기업집단') 및 구조조정 추진 관련하여 대기업계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비합리적인 금융과 노동시장의 엄정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를 촉구한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출 대기업집단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 왔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일정부분 용인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사업체 기준 0.1%에 불과한 대기업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게 된 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기업계의 논리에 밀려 성장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가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돼야 하고,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대기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대기업계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은 신사업 투자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부 대기업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기준의 일괄적인 상향 추진으로 인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제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라는 이름을 뗀 거대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이 아닌 영세 골목상권으로의 진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계의 목소리에 밀려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재벌 2·3·4세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한편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해제된 거대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인력·자금·기술 등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연매출 1억원인 소상공인부터 자산 10조원 수준의 사실상 대기업집단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 및 정체성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과거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大馬不死)식 지원을 이번에도 답습하게 된다면 기존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부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IMF 경제위기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부실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최저임금의 증가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7%, 물가상승률의 3.4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인상되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산업범위·적용범위·대상 등 30년간 변화 없는 낡은 제도로 인해 법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져 가고 있다.

더욱이 '94년 78.2% 수준이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15년 59.4%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극심한 임금격차로 인해 체감 청년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국가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청년 채용은 확대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案)에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음식·선물 등에 대한 일률적인 금액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며 소비심리 위축까지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편향적이고, 영세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경계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취지가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이 영세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 준 것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과 골목상권 진출을 통한 시장생태계 파괴는 정부의 감시 없이는 그 끝을 담보할 수 없다.

규제개혁 만능주의에 빠져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가 아닌,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와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좋은 규제’의 존재가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정한 예외만 인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한'은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중견기업화는 대기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능 및 정책조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연매출 1억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인력·자금·기술 등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간 '甲·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청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과 권한을 높여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근절을 촉구한다.

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강요,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복과 거래 단절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시장 침투', '불공정 행위' 등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적폐'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강제수사권 부여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건 심의·의결 시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심결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높여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인해 집단에서 제외된 대기업들이 신산업 진출 보다는 손쉬운 영세 골목상권으로 침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따른 또 다른 상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영세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시급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지난 50년간 누적돼 온 시장의 폐해를 바로 잡고 대기업집단의 영세 골목상권 진출을 견제하자는 것으로, ‘기업 수’, ‘제품 수량’ 같은 양적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계에서 말하는 통상 마찰 우려는 제도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넷째,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은 없어야 한다.

부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
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며,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우량한 협력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여신회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구조조정 추진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
은행의 지원을 더욱 편중시키고, 실제 정책자금이 흘러가야 할 신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영세 기업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개선과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한다.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
돼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여 청년 채용확대와 대·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경우 약 66조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청년층 신입 직원을 63만 6천
여명 채용(5년 누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대기업 임금 동결 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현행 59.4%에서 2020년에는 75.0% 수준으로 크게 개선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근로조건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 등이 먼저 양보하여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여섯째,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품목(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을 설정하고, 식료품 유통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점업계에 심각한 피해와 함께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700만 중소·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계는 사회 구성원 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 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음을 재확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6. 6. 23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세부 현안에 대한
중 소·소 상 공 인 업 계 입 장**

I.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 현 황

- 1987년,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

연 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기 준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								
지정수	32	40	43	53	61	78	30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기 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수	43	49	51	55	59	62	79	48	53	55	63	62	63	61	65

-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하여 38개 관련법에 원용
-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8년 만에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13~7.25)

□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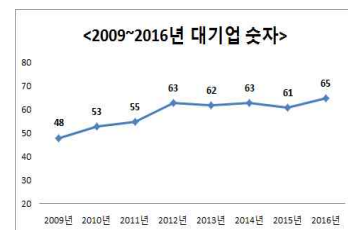
- 최근의 논란은 과거 대기업집단이 꾸준히 증가하던 것과 달리, 63개 수준에서 신규지정·해제가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32개→78개 (46개 증가, 140%)



43개→79개 (36개 증가, 84%)



48개→65개 (17개 증가, 35%)

* 대기업집단 : (12년)63개→(13년)62개→(14년)63개→(15년)61개→(16년)65개

- 지정기준 10조원 상향으로 5조원~10조원 사이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이 기존에 적용받던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규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 지배구조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성과에 역행 우려

- 이번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해외시장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대기업집단이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로 변질될 우려
 - 신규 지정된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헤어샵, 가사도우미, 주차장, 퀵서비스, 꽃배달 등 골목상권 위주의 O2O 서비스 제공으로 소상공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신규 스타트업과의 갈등으로 벤처 생태계 파괴 논란 직면
 - 실제 2009년 기준조정(2조원→5조원, 38개 해제)으로 지정 해제된 일부 대기업집단의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또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은 중견기업특별법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몰림이 발생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며, 대기업 지원이라는 친대기업 정책 논란 지속

개선 방안

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유지 및 공기업집단 제외대책 마련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되어, 공정 거래법 규제 및 38개 관련법에 원용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산업·업종별 분석과 사회적 합의 필요
 - * 中企 CEO 68.6% 10조원 완화에 동의하지 않으며, 71.2%가 현행 5조원 적정 응답
- 이번 개정으로 65개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이 지정 해제되는 것은 과도한 기준 완화
-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의 규제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억제 필요
-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공공기관의 갑질 논란이 발생한 것을 감안, 공기업집단 지정 제외에 따른 하청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계 대책마련 필요

② 선별적 규제완화 검토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중소기업 정책지원 축소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진출, 투자활성화, 해외시장진출 등 규제완화 검토 요청

③ 중견기업 정책의 산업부 이관 및 중소기업부 승격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현재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이 담당, 인력·자금·기술 등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 유사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중견정책이 추진되어 한정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축소 우려
-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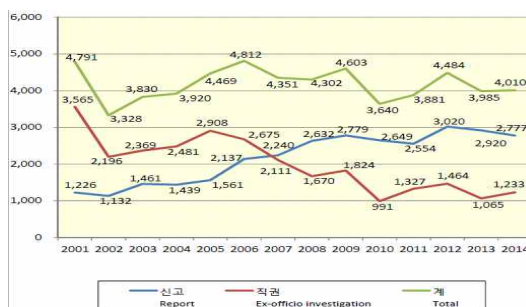
Ⅱ.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공정위 위상권한 강화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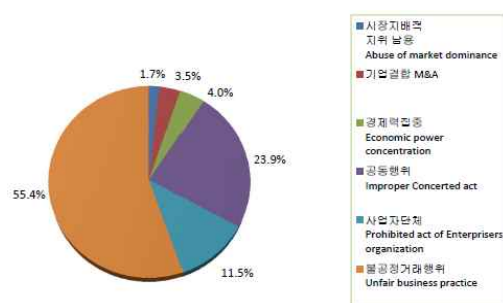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1981년 설립)
 -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심판을 통한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벌칙(징역, 벌금) 부과에 관한 보유
-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정부정책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경제력집중 억제하기 위한 정책추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속적인 노력

□ 문 제 점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등 위법행위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 직권 조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공정위, 연도별 위법사건접수 추이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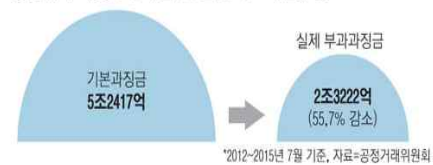
-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에 대한 신고접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4%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실적은 감소

불공정행위 위반신고건수 : (12년)757건 → (13년)445건 → (14년)480건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실적 : (12년)843건 → (13년)381건 → (14년)478건 (직권포함)
 불공정행위 과징금 : (12년)95,815백만원 → (13년)18,604백만원 → (14년)12,714백만원

- 대기업의 거래상지위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의지 의문

- 과징금 산정, 감액 역시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감액하는 등 과징금에 대한 공정성·예측가능성 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한 147건 살펴보니 (단위=원)



매일경제, “짜고 또 짜고, 공정위 과징금 세일”

- 2012~2015년 사이 공정위 과징금은 1~3차의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과징금 대비 55.7% 감소하는 등 ‘부담능력’, ‘시장여건’등 불분명한 기준 적용하여 과징금 감액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보복조치의 처벌규정(관련매출액의 2% 이내)은 담합 등 기타위반행위 처벌규정(관련매출액의 10% 이내)에 비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3차의 조정과정(기간·횟수, 고의·과실, 부과과징금)을 거쳐 더욱 낮아져 대기업은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 > 손해’의 계산으로 근절할 유인이 없어짐
-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대기업들의 가격담합과 달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뤄지는 다수 생계형 중소기업의 가격결정은 공정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짐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위반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

- 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합리적인 처벌규정 및 적극적 행정
 -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 < 손해’가 되도록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독과점 대기업의 가격담합과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가격결정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고 처벌기준의 차별적용 필요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위상 강화
 - 국무총리 소속 →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감사원과 같은 독립성 보장
 - 공정위원장 임기보장(3년)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기반 조성
 - * 제12대 강철규 위원장이 유일하게 임기 만료
 - 강제수사권 등 대기업 등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 마련
- ③ 사건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상임 5인, 비상임 4인) 구성 시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 위촉

Ⅲ.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현 황

- 2006년 고유업종폐지 후 대기업들은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 추진
 - 특히, 재벌 2·3·4세들은 신산업이나 해외시장 진출 보다는 시장 진입이 용이한 생계형 업종으로 무차별적으로 진출

소매업마저 짓밟는 롯데...생계형 서비스업종 무차별 진출, 시사오늘('15.8.21)
 롯데, 대기업 중 음식·숙박·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인 생계형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진출(전체 계열사 79개 중 22개로 1위)

-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있음

* 전체현황 : 109개 [합의·권고(74개), 시장감시(9개), 상생협약(26개)]

구 분	전 체	합의·권고	시장감시	상생협약
제 조 업	87	56	7	24
서비스업	22	18	2	2
합 계	109	74	9	26

-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5조→10조) 관련, 비록 상향 취지가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중소·소상공인들은 대기업집단이 영세 골목상권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

□ 문 제 점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에 의거 민간기구인 동반성장 위원회에 합의 도출 및 공표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세부절차 및 이행 수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지속

① 대기업의 상생의지 미흡으로 권고사항 피해 편법 진출

▲한식뷔페 편법 진출 : 한식 등 외식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계열사이거나 자가 건물일 경우(연면적 2만㎡ 이상) 음식점 가능. 이러한 제도 허점을 이용하여 CJ푸드빌의 계절밥상, 이랜드의 자연별곡, 신세계푸드의 올반은 2013년 외식업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한식뷔페 50여 곳을 더 늘림

② 적합업종 지정 또는 위반시 이행력·강제력 부재

- 대기업이 합의를 원치 않아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로 버틸 경우, 지정이 지연 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발생

- '16.6.15 “적합업종 지정에도 골목상권 빼앗는 '계란' 대기업들”, 이데일리 -
▲하림·삼립·대상은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지연되는 기간을 틈타 계란 유통시장에 신규 진출. 이후 적합업종으로 지정('15년말)되었으나, 이미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자제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없는 문제 발생
▲'15년 중기연구원 분석결과 연3조797억원에 달하는 계란유통시장에서 대·중견 기업은 대형마트·B2B납품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67.1% 약2조원 비중 차지, 슈퍼마켓 등 중소기업 분야인 골목상권에 대기업 진입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들은 시장점유율 35% 약3,55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권고사항 위반시, 동반위는 시정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제재 수단이 없어, 미이행시 사후 조치인 중기청 사업조정*만을 신청가능
* 사후적 조정에만 그치는 한계 및 조정까지 시간·절차가 과다·복잡하여 실적 전무
- 특히, 적합업종 선정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017년부터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
- 동네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사업영역 보장이 필요

□ 개선 방안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대기업들의 진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
 - 상생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체적 근거 마련
 - 지정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입 차단
 - 대기업 진입이 임박한 긴급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패스트 트랙 도입
 -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벌금·벌점, 공시 등의 제재 수단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개념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중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

□ 생계형 업종

○ 정 의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단순노동투입형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저마진 구조를 가져 가게 생계유지 위주로 운영
-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내 중소기업자간 경쟁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짐

○ 선정시 고려사항

- ① (규모의 영세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업종
- ② (저부가가치 산업)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마진 구조를 가지는 업종
- ③ (낮은 진입장벽)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강도가 높은 업종

※ 기존 연구자료

- ① **생활형 서비스업** :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분야로 최소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분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분야('12년, 중소기업연구원)
- ② **생계형 자영업** :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 사양화로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12년 삼성경제연구소)
- ③ **생계형 서비스산업** : 음식, 숙박, 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 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08년, 한국은행)

참고2

생계형 적합업종 예시(안)

번호	구분	업종	관련 대기업
1	서비스	제과점업	SPC그룹, CJ
2		음식점업(한식)	삼성,CJ,GS,LG, 농심,아워홈 등
3		음식점업(중식)	
4		음식점업(일식)	
5		음식점업(분식)	
6		음식점업(서양식)	
7		음식점업(기타외국식)	
8		음식점업(기타음식)	
9		자동차 전문수리업	현대·기아차,SK,GS
10		자동차판매기운영업	롯데,코카콜라,신세계
11		자전거소매업	LS
12		문구소매업	신세계,롯데,홈플러스
13		계란도매업	하림,삼립,대상
14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교보생명
15		중고자동차 판매업	SK,GS
16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KT
17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롯데
18		보험대차서비스	롯데,SK
19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SK,E1,GS
20	제조	두부	CJ,대상,풀무원
21		순대	아워홈
22		메밀가루	동아원
23		전통떡	SPC그룹
24		떡국떡 및 떡볶이떡	아워홈
25		도시락	신세계,CJ,GS,한화
26		고추장	CJ, 대상,샘표,사조
27		간장	대상,샘표,사조
28		된장	CJ, 대상,샘표,사조
29		청국장	아워홈
30		국수	CJ,농심,오뚜기,풀무원
31		냉면	CJ,농심,오뚜기,풀무원
32		당면	CJ,농심,오뚜기,풀무원
33		앙금류	SPC그룹
34		단무지	CJ,풀무원,사조
35		막걸리	하이트진로,국순당,농협
36		사료용유지	대경오앤티
37		자동차재제조부품	현대·기아차
38		기타인쇄물	동아출판
39		맞춤양복	LG,삼성

□ 중앙회 “적합업종 법제화시 국제통상 규범과의 충돌 검토” 보고서

- 시장접근 : 시장접근 제한은 업체의 수, 생산량을 제한하는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합업종제도는 시장 개방을 전제로 대기업·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질적 접근방식이므로 위반 소지 낮음
- 내국민 대우 : 적합업종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차별 적용되지 않음.
- 국내규제 : 적합업종 지정시 정부의 자격요건 기준 설정·운영이 합리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위반 가능성 낮음
- 대우의 최소기준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물리적 보호권을 발동할 의무, 적법절차, 투명성, 신의성실원칙, 예측가능성 등을 포함.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의 사례로 중소기업 보호정책 예측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판결”

- 대법원의 '15. 11. 19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 판결에서 외국계인 홈플러스 관련하여 WTO GATS 및 한-EU FTA 위반 여부에 대해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에 대하여는 협정의 직접효력이 미치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소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②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협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

□ 국회입법조사처 “통상협정과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

-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게 진입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는 인정 가능

※ 실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우에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의 폐지권고는 없어, 실제 국가간의 통상마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상마찰 우려는 제도 도입을 방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

Ⅳ. 산업 구조조정 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현 황

- 평상시 대기업의 이익은 사유화되나, 위기시 손해는 사회화되는 경향
 - 대기업은 퇴출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부실 대기업의 연명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 (대마불사)
 - * 대우조선해양, '13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15년 국책은행이 4.2조원 지원
 - * STX조선, 산은이 4.5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최근 법정관리 개시
 - 한편 중소기업은 채권단 구성이 단순하고 구조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부실이 가시화되면 자금난에 직면한 이후 대부분 퇴출에 이르게 됨
 - * 대 기 업 : 부실 → 금융기관(채권단) 자금지원 → 연명(또는 퇴출)
 - * 중소기업 : 부실 → 금융기관(채권단) 자금회수 → 퇴출
- 최근 정부는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마련 (정부 직접출자 1조원 + 펀드 조성 11조원)
 - 동 방안에는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까지 포함된 상황
 - *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조성 참여
 -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10조원 규모 보증)

□ 문 제 점

- 정책자금, 부실 대기업 지원에 집중 → 비효율적 자원 배분 야기
 - 부실 대기업 지원에 사용되는 정책자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 만성적 한계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은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 ('11)14.6 → ('15.6)35.8조원, [중소기업] ('11)8.2 → ('15.6)7.9조원
- 최근 부실 대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까지 참여 →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충지원 기능 약화 우려

신용보증기금	'13년 현대상선(4,675억원)과 한진해운(4,306억원)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재원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에 따라 부담 가중 및 중소기업 지원 약화
기업은행	고객인 중소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대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실이 본격화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회수 등 피해 우려

- 구조조정 대기업의 관계기업·하청업체, 근로자, 지역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은 적절 (고용유지·실직자지원·채불임금 청산 지원 등)
- 다만, 납품대금 미회수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장치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① 부실 대기업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우선변제를 위한 제도 마련
 - (회생·파산) 원사업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인 매출채권을 '공익채권' 및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우선적 변제
 - (자율협약·워크아웃) 대기업 경영위기 가시화 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하도록 '하도급법'등에 법적 근거 마련
- ②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재무제표 악화시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방지
 - 구조조정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대상 여신회수 관리감독 강화
- ③ 모기업 부도시 협력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 결제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 *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는 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채권 인수기관)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어음 할인보다 안전
- ④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대규모 공적 자금투입 방지 →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유도
 - 부실 대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지급보증)의 역할 최소화

V. 시장친화적 최저임금 개편 및 大·中企 임금격차 완화

□ 현 황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약 8% 전후로 가파른 상승
 - *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 : (참여정부) 10.6%, (이명박정부) 5.2%, (박근혜정부) 7.5%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5년안에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 발표*
 - *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고용부, '14. 4. 1)
-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임금수준이나 생계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
 -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월급여액 기준, 서울의 임금수준을 100.0으로 볼 때 제주도는 70.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4)
- 4.13 총선 공약으로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 제시했으며, 노동계도 전년도와 같이 시급 1만원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계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

< '16. 4월 각계 최저임금 인상(안) >

새누리당	▶ 4년내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공약(年 △8~9%)
더민주당	▶ 최저임금 10,000원 공약(年 △14%)
국민의당	▶ 근로자 평균소득의 50%까지 인상(시급 6,320원)
민주노총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65.8%)
한국노총	▶ 총선 정책요구안으로 10,000원 인상 위한 기준 개선 요구

-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1차 집단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의 2차 집단으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기업을 강한 연공성* 임금과 고용 경직성을 강성노조가 지지하여 OECD 최고수준 임금인상 누적되었으나 생산성 증가는 제자리걸음**

* 임금연공성 국제비교 (한국, 20~30년 근로자 임금이 1년 미만 근로자의 3.1배)

구 분	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일본
1년 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15년 미만	211.1	166.2	133.5	132.6	136.9	116.1	134.3	168.7
20~30년 미만	313.0	191.2	168.2	146.3	152.7	110.8	156.7	241.6

**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제조업 평균임금 수준

: 한국 (1.58배), 미국(0.79배), 프랑스(0.84배), 영국(1.15배), 일본(1.27배), 독일(1.33배)

□ 문 제 점

-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 중 상여금,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체감 최저임금 수준과 괴리 발생
 - 이로 인해 실제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기업간 지불능력·근로조건·생산성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문제 초래
 - *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률의 편차가 40%p에 달해 심각한 상황
 - * 2014년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을 (경향부가조사 기준, 최임위, 2015)
 - : (전체) 12.1% (전기가스업) 0.5% (제조업) 5.2% (건설업) 6.3%,
 - (도소매업) 16.6% (운수업) 10.1% (숙박음식업) 34.2% (농림어업) 42.9%
- 더욱이 대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 대·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지속되는 상황
 - * 원사업자의 원가절감 요구로 인해 중소기업의 72.1%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 악화는 ‘근무여건 악화’, ‘품질저하’, ‘투자 여력 감소’가 발생한다고 응답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원가절감 실태조사 15. 4월)

< 참고 : 대·중소기업 월평균 임금격차 추이 >

구 분	94년	97년	00년	03년	06년	09년	12년	15년
중소기업 임금수준	78.2	76.8	70.8	64.9	61.6	60.3	60.6	59.4

*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대기업 임금=100.0으로 한 경우의 임금수준임

* 자료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시간당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

□ 개선 방안

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 우리나라는 지역간 임금수준 차이가 30% 수준이며, 업종간 임금 격차 역시 최대 3.1배에 달함에도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월급여액 기준, 서울의 임금수준이 100.0일 경우 제주도의 경우 70.2

* 월임금총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1,772천원), 전기·가스·수도사업(5,542천원)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13)

⇒ 지역·업종별 임금수준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필요

②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혼란 가중되고 있음*

*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매월 지급된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이라 판결

⇒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추어 개편 필요

③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대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안정에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참고1

근로소득 상위근로자 임금동결시 신규채용 규모 분석

-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 동결할 경우에 절감되는 인건비는 약 66조원(5년 누계)이며, 동 인건비로 채용 가능한 청년층 신입 직원은 63만 6천여명(5년 누계)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시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개수>

구분	연도별 임금인상시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총급여액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액 [A]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액	청년층 1인당 인건비 [B]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수	청년층 일자리 창출개수 [A/B]
	<연간>	<매년발생액>	<누계>	<연간>	<매년창출수>	<누계>
2015년	112조4,328억원	4조2,280억원	4조2,280억원	3,111만원	135,911명	135,911명
2016년	116조2,555억원	8조5,999억원	12조8,279억원	3,217만원	131,442명	267,353명
2017년	120조2,082억원	13조1,203억원	25조9,482억원	3,326만원	127,120명	394,473명
2018년	124조2,953억원	17조7,944억원	43조7,426억원	3,439만원	122,940명	517,412명
2019년	128조5,213억원	22조6,275억원	66조3,701억원	3,556만원	118,897명	636,310명

- 주: 1.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로 집계된 근로소득(정액급여+연간 상여·성과)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106조 837억원(2013년 기준)
 2. 2015년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총급여액(112조 4,328억원) = 106조 837억원 × 2014년 명목임금상승률(1.025) × 2015년 명목임금상승률 추정치(1.034)
 3. 매년 인건비 절감액은 첫째 절감액에 비해 매년 크게 발생하지만 전년 추가 채용된 인원내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 청년층 일자리창출 개수 추정식

$$\text{청년층 일자리창출 개수} = \frac{\text{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시 인건비 절감분}}{\text{청년층 신입직원 1인당 인건비}}$$

- ① 근로소득 상위 10%(2013년 5,842만원, 2015년 6,092만원 이상으로 추정) 이상 근로자 127만 6,206명 대상 분석
- ② 임금상승률 : 2014년 명목임금 상승률 2.5%, 2015년 이후 5년간 3.4% (최근 5년간<2010~2014년> 명목임금상승률 평균치) 적용
- ③ 청년층 1인당 인건비는 5인 이상 사업장, 25~34세 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하) 임금평균(고용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④ 임금동결 시 간접비(사회보험료 등) 절약액 감안 :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 14.4% 절감

참고2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시 임금격차 축소 규모

- 1998년 이후 18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인상률은 대기업 6.1%, 중소기업 4.8% 수준으로 임금총액 값 뿐 아니라 임금 인상률 차이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대-중소기업 명목임금인상률 추이>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연도	중소기업	대기업
1998	-2.5%	-1.1%	2007	6.2%	7.2%
1999	6.9%	14.7%	2008	2.7%	4.7%
2000	9.2%	8.8%	2009	2.6%	0.3%
2001	5.6%	6.0%	2010	5.5%	9.1%
2002	9.9%	15.5%	2011	-0.9%	-0.4%
2003	7.4%	10.2%	2012	5.9%	3.5%
2004	6.1%	9.1%	2013	3.7%	3.6%
2005	6.7%	6.1%	2014	2.4%	5.3%
2006	5.8%	4.1%	2015	3.4%	3.9%
연평균				4.8%	6.1%

주: 1.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총액 기준('08~'15는 상용근로자 기준)

2. 중소기업 5~299인, 대기업 300인 이상 기준('98년 통계는 중소기업 10~299인)

- IMF 이후 연평균 명목임금인상률을 적용,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59.4%('15, 대기업 100% 기준)에서 75.0%('20)로 16.0%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5년간 임금동결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추이>

구분	<인상률유지시>			<임금동결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비중	대기업	임금비중
2015	16,965원	28,577원	59.4%	28,577원	59.4%
2016	17,779원	30,320원	58.6%	28,577원	62.2%
2017	18,633원	32,169원	57.9%	28,577원	65.2%
2018	19,527원	34,132원	57.2%	28,577원	68.3%
2019	20,464원	36,214원	56.5%	28,577원	71.6%
2020	21,447원	38,423원	55.8%	28,577원	75.0%

주: 1.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시간당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

Ⅵ.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선

□ 현 황

-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입법(권익위, '13.8월)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행 '16.9.28)
 - 법률 위임사항을 토대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권익위, 5.13~6.22)
-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입법취지(공공부문 신뢰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품목 및 가격설정 규제로 인해 심각한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논란 확산
- 이에 범 경제계·농림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26개 단체, 6.15) 및 시행령 개정의견 전달(6.21)

□ 문 제 점

-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액
 -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격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피해 우려
 - * 금품허용 기준가액 :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 특히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업계는 연간 총 2조 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업체당 평균 월매출 약 31만원 감소)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509개사 방문조사 및 분석 결과('16.4월)
 -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가격기준으로는 외국산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의 수제품은 해당사항 없음
- 업종 구분이 없는 일률적인 '금품' 설정
 -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 중심의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 통상적인 선물·식사 등도 '금품수수'로 인식 가능 →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침체 가속화 예상

□ 개선 방안

① 소상공인·농림축수산업계 현실에 맞는 가격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

-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가액 재검토 요망

② 금품 범위에 대한 제외품목 설정 (법률 개정)

- 법률 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 제외

< 참고 : 경제6단체, 농림축수산인, 중소소상공인업계 호소문 >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단체는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우리 경제·사회 현실을 고려하고 저성장 장기화, 지속된 내수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한다.

‘청탁금지법’제정·시행을 통해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당초취지에는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단체 모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는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함께 해당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는 직접적인 큰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되어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으로는 외국산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6단체, 농림축수산인,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